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6. 24(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9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4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V. 검토내용

1. 금천구 결산 총괄

가. 2024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88,652,338,700	907,445,806,328	759,524,787,697	147,921,018,631
일반회계	854,179,153,590	872,655,866,005	740,177,300,067	132,478,565,938
특별회계	34,473,185,110	34,789,940,323	19,347,487,630	15,442,452,693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20,981,493,340	26,989,299,570	880,535,800	8,731,192,917	13,075,040	-	90,325,421,964
일반회계	20,261,493,340	25,570,176,570	880,535,800	6,978,499,197	13,075,040	-	78,774,785,991
특별회계	720,000,000	1,419,123,000	-	1,752,693,720	-	-	11,550,635,973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7,445,806,328원으로 예산현액 888,652,338,700원보다 18,793,467,628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83.6%인 759,524,787,69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921,018,631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20,981,493,340원, 사고이월비 26,989,299,570원과 계속비이월 880,535,8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744,267,957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0,325,421,964원** 임.

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㉗=㉔+㉕)	초과세입금(㉔)	집행잔액(㉕)	비 고
합 계	90,325,421,964	18,793,467,628	71,531,954,336	
일 반 회 계	78,774,785,991	18,476,712,415	60,298,073,576	
특 별 회 계	11,550,635,973	316,755,213	11,233,880,760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90,325,421,964원으로 세입결산의 초과세입금(18,793,467,628원)과 세출결산의 실제 집행잔액(71,531,954,336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의 잉여금 처리)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재원으로 편성 가능함.

다.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30,303,578,000	559,838,000	530,251,130	-	29,586,870
일 반 회 계	30,226,541,000	559,838,000	530,251,130	-	29,586,870
특 별 회 계	77,037,000	-	-	-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303,578,000원으로서

전년도 48,431,748,000원보다 18,128,170,000원 감소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 외 7건 559,83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30,251,13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9,586,8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라.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41,506,931,619	864,137,552	9,354,322,108	8,490,184,556	42,371,069,171
남북교류협력기금	205,886,640	-39,557,760	8,889,700	48,447,460	166,328,880
고향사랑기금	-	115,413,680	115,413,680	-	115,413,680
재난관리기금	5,829,497,642	136,071,078	1,337,602,208	1,201,531,130	5,965,568,7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542,966,126	952,368,579	952,368,579	-	21,495,334,705
중소기업육성기금	5,058,508,616	-69,296,188	4,934,542,682	5,003,838,870	4,989,212,428
청년미래기금	2,123,589,038	-5,255,379	106,027,621	111,283,000	2,118,333,659
자활기금	1,100,495,516	-13,395,635	196,604,365	210,000,000	1,087,099,881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	214,594,384	262,702,384	48,108,000	214,594,384
노인복지기금	351,942,060	13,582,890	22,438,890	8,856,000	365,524,950
양성평등기금	429,727,593	-16,151,370	21,207,190	37,358,560	413,576,223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471,434,675	7,441,810	30,569,210	23,127,400	478,876,48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47,707,073	39,997,840	56,061,066	16,063,226	387,704,913
옥외광고발전기금	1,000,736,120	44,726,864	123,879,204	79,152,340	1,045,462,984
도로굴착복구기금	3,177,066,730	-494,418,037	1,091,948,553	1,586,366,590	2,682,648,693
식품진흥기금	867,373,790	-21,985,204	94,066,776	116,051,980	845,388,586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41,506,931,61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354,322,10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8,490,184,556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2,371,069,171원임

2. 행정안전국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12,165,620,000	12,783,345,510	12,758,709,630	99.81
행정지원과	4,221,297,000	4,455,177,300	4,443,149,240	99.73
자치행정과	902,885,000	956,172,550	955,584,730	99.94
교육지원과	5,688,455,000	6,015,549,310	6,015,549,310	100.00
주민안전과	913,177,000	934,441,600	922,421,600	98.71
민원여권과	439,806,000	422,004,750	422,004,750	100.00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입 예산현액은 121억 6,56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 8,334만 5천원, 세입결산액은 127억 5,870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99.81%임.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169,829,963,360	155,953,360,710	3,580,115,260	360,542,550	9,935,944,840	5.85
행정 지원과	119,469,698,400	115,530,120,360	33,091,000	28,361,550	3,878,125,490	3.25
자치 행정과	11,659,334,190	10,468,983,692	345,779,190	181,338,420	663,232,888	5.69
교육 지원과	32,000,695,770	23,872,669,178	2,876,311,070	123,170,920	5,128,544,602	16.03
주민 안전과	5,837,632,000	5,284,568,090	300,000,000	25,359,570	227,704,340	3.90
민원 권과	862,603,000	797,019,390	24,934,000	2,312,090	38,337,520	4.44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현액은 1,698억 2,996만원 3천원이며, 지출액은 1,559억 5,33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8,011만 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054만 2천원, 집행잔액은 99억 3,594만 4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5.85%입니다.

1)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3,608,045,000	547,931,280	438,674,670	3,059,796,000	
자치 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174,270,000	49,500,610	49,500,600	124,670,000	(연도 내 지출불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24.12.18)으로 연도 내 집행불 가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교육 지원과	(가칭)금천국제 외국어센터 조성	3,033,841,000	423,649,000	314,392,400	2,610,192,000	(연도 내 지출불가) 2025년 하반기 신축공사 착공 예정
주민 안전과	골목길 안심 지능형 CCTV 설치	300,000,000	0	0	300,000,000	(연도 내 지출 불가) '24년 12월 제10차 특별교부금 으로 교부됨
민원 여권과	신속 정확 한 민원 처리	99,934,000	74,781,670	74,781,670	24,934,000	(연도 내 지출 불가) '24. 12.18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

○ 행정안전국 명시이월사업은 4건, 30억 5,979만원 6천원임

<사고이월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18,185,640,740	11,376,011,133	10,812,553,493	520,319,260	
행정 지원과	효율적 인 청사 관리	3,624,540,400	3,475,106,080	3,442,015,080	33,091,000	2024년 기획상황실 대관 일정으로 인하여 연내 준공 불가
자치 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649,729,000	644,746,610	617,226,610	27,520,000	한국농동공조안전관리원 검사 일정상 연말 검사가 어려워 최종 납품이 불가
	시흥 4동 증축공유주방 설치	212,000,000	189,508,390	19,690,000	191,609,190	계약유찰 재공고 11월말 폭설 등 공사 지연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이월
	공동체 경제 역량강화 및 기록 체계화	18,400,000	18,400,000	16,420,000	1,980,000	시스템 사용 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되어 2025. 4. 4자로 계약이 종료됨
교육 지원과	금천사이언스 큐브 운영	74,300,000	69,597,000	40,190,000	29,407,000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 운영 으로 '24.12월 모집 후 '25. 1월~2월 교육 운영
	금천진로진학 지원센터 건립	2,726,828,120	2,166,353,300	2,150,977,830	15,375,470	BF인증 신청 및 접수관련 인증기관의 일정지연으로 인한 용역 연기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교육 지원과	맞춤형 대입지원 정책추진	474,360,000	446,450,600	339,044,600	107,406,000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을 안정 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약 기간 설정
	금천평생 학습관 건립	7,399,642,220	3,942,200,153	3,872,596,973	4,674,000	BF 인증지연에 따른 본인증 컨설팅 비용 이월
	(가칭)금천국제 외국어센터 조성	3,005,841,000	423,649,000	314,392,400	109,256,600	2025 하반기 신축설계 준용 예정

○ 행정안전국 사고이월사업은 9건, 5억 2,031만 9천원임.

2) 예산전용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행정안전국			1,530,888,000	9,308,000	9,308,000	
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342,620,000	2,120,000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예산 확보 필요
	효율적인 청사관리	301-14 기타보상금			2,120,000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38,598,000	3,188,000		전직원 독감예방접종 실시 계획에 따른 간호사 인력 채용 예산 확보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88,000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020,000	4,000,000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예산 확보
	자원봉사활동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41,650,000		4,000,000	

○ 행정안전국 예산의 전용은 2개부서 3건, 930만 8천원임.

3) 예산이체 : 행정안전국 예산의 이체는 2개부서 4건,
22억 250만원임.

4) 집행잔액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낙차	찰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잔
계	274,763,971,150	9,935,944,840	3.62	130,198,490	195,366,410	111,193,480	9,487,682,460	11,504,000
행정지원과	119,469,698,400	3,878,125,490	3.25	0	178,490,450	0	3,696,825,040	2,810,000
자치행정과	11,659,334,1980	663,232,888	0.57	22,795,210	7,602,960	2,400,000	626,244,718	4,190,000
교육지원과	32,000,695,770	5,128,544,602	16.03	79,784,360	6,901,000	57,075,000	4,982,477,242	2,307,000
주민안전과	5,837,632,000	227,704,340	3.90	27,618,920	2,372,000	49,160,000	146,746,420	1,807,000
민원여권과	862,603,000	38,337,520	4.44	0	0	2,558,480	35,389,040	390,000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집행잔액은 99억 3,594만 4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62%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3,019만 8천원, 낙찰차액이 1억 9,536만 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119만원 3천원, 지출잔액 94억 8,768만 2천원임.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원)

구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6,035,384,282	211,926,998	1,461,905,588	1,249,978,590	6,247,311,280
남북교류기	행정지원과	205,886,640	-39,557,760	8,889,700	48,447,460	166,328,880
고향사랑기	자치행정과	0	115,413,680	115,413,680	0	115,413,680
재난관리기	주민안전과	5,829,497,642	136,071,078	1,337,602,208	1,201,531,130	5,965,568,720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기금,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6,190만 5천원이며 사용액은 12억 4,997만 8천원으로 최종 2024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2억 4,731만 1천원임.

라. 예비비 결산현황

- 801-01 일반예비비

(단위 : 원)

부서명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위	세부	통계목					
합계				73,673,000	47,740,000	0	25,933,000	
자치행정과	구정참여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사무추진	사무관리비	21,173,000	14,740,000		6,433,000	2024.10.16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추진
			공공운영비	2,500,000	0		2,500,000	
주민안전과	재난안전관리	주민안전보험	공공운영비	50,000,000	33,000,000		17,000,000	구민대상 안전보험 운영 지속화

3. 검토의견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년대비 0.39% 증가한 3.62%임.
- 행정안전국 예산 전용액이 전년 대비 14억 4,209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액의 큰 폭 감소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예산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감 조정 후 집행함으로써,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국의 경우 전년대비 이월사업비가 68억 9,582만 2천원이 감소한 35억 8,011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 과도한 사업비 이월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묶여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시에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이 원활 하지 못한 사업(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